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1. 20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교육감 사무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5조)

- 1)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에 맞게 정비함 (안 제5조제1호)
- 2)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일부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제38호)
- 3)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노동인권교육 및 학생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제39호 가~나목)

- 4)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 사무를 알기 쉽게 정비함 (안 제5조제1호 자목 내지 타목, 안 제5조제40호, 제41호)
- 5)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과 정보화 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 (안 제5조제41호 바목)
- 6)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·학교로 위임함 (안 제5조제31호 다목, 안 제6조제9호, 안 제7조제7호)
- 7)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 위임 사무 중 교육장에게 재위임되는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함 (안 제5조제37호)

○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6조)

- 1)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학교로 위임 (안 제6조제9호)

○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7조)

- 1)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를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임 (안 제7조제7호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유무선망 구축과 정보화 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사무를 비롯하여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·자율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사무를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,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